

의안번호	2214150
의 퇴 인	임종득의원
회 답 일	2026.5.13.
추 계 번호	25D606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군무원의 정년을 1년 연장할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군무원 인건비 증가 및 신규채용 이연에 따른 인건비 감소를 함께 고려한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1,284억 7,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명, 백만원)

현행법에 따른 퇴직시기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	9,267	30,779	42,771	50,056	61,997	194,869
신규채용 이연에 따른 인건비 감소	-2,502	-7,787	-15,199	-17,619	-23,285	-66,392
합계	6,764	22,993	27,571	32,437	38,713	128,478

주: 연금기여금 및 수령액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포함하지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1조 (정년)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정비, 통신 등 전문 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정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1조 (정년)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군무원의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61세로 연장될 경우, 연장되는 군무원의 급여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
 - 추계에서는 모든 군무원의 정년이 61세로 1년 연장되더라도 군무원정원은 변함이 없다는 가정하에, 정년이 연장되는 인원만큼 신규채용이 이연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에서는 추계기간에 정년퇴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의 2025년 인건비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임금상승률을 적용¹⁾
 - 정년 연장에 따라 연금기여금 및 연금수령액 증가 등 추가재정소요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정년연장대상자의 연금 관련 구체적인 정보의 부재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 2027년 정년퇴직예정자부터 정년이 1년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군무원 정년 연장(안 제7조제1항제4호)

- 개정안에 따라 군무원의 정년을 61세로 연장할 경우, 군무원의 급여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증가 및 신규채용 이연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감소를 추계
- 인건비 단가는 현행법에 따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예상되는 퇴직자의 2025년 기준 인건비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상승률(2026.3)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공무원임금상승률(%)	3.5	3.0	3.0	3.0	3.0	3.0	3.0

- 군무원의 경우, 정년퇴직 1년 전 공로연수를 간다는 점을 고려하여, 퇴직 연령이 1년 연장될 경우 공로연수 기간도 1년씩 이연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함
- 군무원 정년 연장에 따라 이연되는 신규채용인력의 인건비는 9급2호봉으로 가정함

[표 2] 퇴직시기별 인원 및 인건비 단가

(단위: 명, 백만원)

현행법에 따른 퇴직시기		인원	급여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27	6월	142	일반급여	100.4	103.5	106.6	109.8	113.1	116.4
	12월	129		94.3	97.1	100.1	103.1	106.1	109.3
	6월	142	공로연수 급여	89.3	92.0	94.7	97.6	100.5	103.5
	12월	129		86.9	89.5	92.2	94.9	97.8	100.7
2028	6월	171	일반급여	101.4	104.4	107.5	110.8	114.1	117.5
	12월	208		92.3	95.1	97.9	100.9	103.9	107.0
	6월	171	공로연수 급여	90.8	93.5	96.3	99.2	102.2	105.2
	12월	208		84.8	87.4	90.0	92.7	95.5	98.3
2029	6월	226	일반급여	98.8	101.8	104.8	108.0	111.2	114.5
	12월	212		90.1	92.8	95.6	98.5	101.4	104.5
	6월	226	공로연수 급여	87.4	90.0	92.7	95.5	98.4	101.3
	12월	212		82.7	85.2	87.8	90.4	93.1	95.9
2030	6월	265	일반급여	96.8	99.8	102.7	105.8	109.0	112.3
	12월	277		88.7	91.3	94.1	96.9	99.8	102.8
	6월	265	공로연수 급여	85.4	88.0	90.6	93.4	96.2	99.0
	12월	277		81.1	83.5	86.0	88.6	91.3	94.0
2031	6월	355	일반급여	95.2	98.1	101.0	104.0	107.2	110.4
	12월	335		87.1	89.7	92.4	95.2	98.1	101.0
	6월	355	공로연수 급여	83.3	85.8	88.3	91.0	93.7	96.5
	12월	335		78.8	81.1	83.6	86.1	88.7	91.3
9급2호봉			일반급여	34.2	35.2	36.3	37.4	38.5	39.7

주: 9급2호봉 인건비에는 봉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년퇴직예정자의 인건비에는 봉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관리업무수당,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고 있음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군무원 정년을 61세로 연장할 경우, 추계기간 정년퇴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이 정년 1년 전 공로연수를 가는 것으로 가정하여 공로연수 인건비 단가와 일반근무 인건비 단가를 고려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정
- 정년이 연장되는 인원만큼 신규채용도 1년 이연되어, 1년 동안 해당인원의 신규채용 인건비를 차감함

[표 3]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명, 백만원)

현행법에 따른 퇴직시기			인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퇴 직 자	2027	6월	142	7,346	6,725				14,071
		12월	129	989	11,888				12,877
	2028	6월	171	932	9,194	8,481			18,607
		12월	208		1,646	18,721			20,367
	2029	6월	226		1,326	12,200	11,118		24,644
		12월	212			1,716	19,737		21,452
	2030	6월	265			1,653	14,443	13,123	29,219
		12월	277				2,372	26,035	28,406
	2031	6월	355				2,386	19,592	21,979
		12월	335					3,247	3,247
소계				9,267	30,779	42,771	50,056	61,997	194,869
신규 채용 감소	2027	6월	-142	-2,502					-2,502
		12월	-129		-4,683				-4,683
	2028	6월	-171		-3,104	-3,197			-6,301
		12월	-208			-7,777			-7,777
	2029	6월	-226			-4,225	-4,352		-8,577
		12월	-212				-8,165		-8,165
	2030	6월	-265				-5,103	-5,256	-10,359
		12월	-277					-10,988	-10,988
	2031	6월	-355					-7,041	-7,041
		12월	-335						0
소계				-2,502	-7,787	-15,199	-17,619	-23,285	-66,392
합계				6,764	22,993	27,571	32,437	38,713	128,47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군무원의 정년을 1년 연장할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군무원 인건비 증가 및 신규채용 이연에 따른 인건비 감소를 함께 고려한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1,284억 7,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명, 백만원)

현행법에 따른 퇴직시기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	9,267	30,779	42,771	50,056	61,997	194,869
신규채용 이연에 따른 인건비 감소	-2,502	-7,787	-15,199	-17,619	-23,285	-66,392
합계	6,764	22,993	27,571	32,437	38,713	128,478

주: 연금기여금 및 수령액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포함하지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기간 정년퇴직 대상 인원이 전원 1년간 정년을 연장하고, 그 인원만큼 신규채용도 1년씩 이연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